



이자 지급 시기 및 방법	<input type="checkbox"/> 매 ( )개월마다 ( )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제2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지연배상금률은 약정금리 + ( 3 )% 내로 적용하며, 그 상한은 법정최고금리 이내로 제한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3조 중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카드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대출기간 만료일(기간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의 중도상환수수료란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사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합니다
1. "중도상환원금"은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잔존기간"은 대출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잔존일수로 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만료일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만료일로 적용합니다
-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대출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잔존 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2.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카드사가 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
  3. 상품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여신금리를 가산한 경우
  4.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채무관계인이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

## 제4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제5조 담보·보험

본인은 카드사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카드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카드사가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카드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아래 "연대보증인 입보가 가능한 경우"란을 작성합니다

## 연대보증인 필수 기재란

연대보증인 입보가 가능한 경우 작성 (차주가 법인인 경우) - 택1	<input type="checkbox"/> 대표이사 <input type="checkbox"/> 무한책임사원 <input type="checkbox"/> 최대주주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인 포함 과점/대주주(30%초과)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대출의 목적·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하단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란은 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대보증인 정보	하나카드(주) 앞
----------	-----------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하나카드(주)(이하 "카드사")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에서 정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채무자가 따로 카드사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연락처	(TEL)			
인감 및 본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보증채무의 내용

①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 1. 채무자

기업명		주소
-----	--	----

###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카드사는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대해 보증인에게 설명하였고 연대보증인은 _____에서 정한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다.	<b>[특정근보증]</b>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한 때에는 그 채무 포함) 20 년 월 일 약정서
--	---

### 3. 근보증 한도액

근보증 한도액	금	원
---------	---	---

### 4. 근보증 결산기

<b>[장래지정형]</b>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증인은 서명 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카드사는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b>[자동확정형]</b>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증인은 서명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_____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b>[지정형]</b> 20 년 월 일	

②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제1항 제2조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b>특약사항</b>	보증인 (인)
<b>다른 담보 ·보증약정 과의 관계</b>	①보증인은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 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b>담보 등의 변경·해지 ·해제</b>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격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 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카드사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알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기재예시:1. 수령함, 2,3. 들었음)

<b>1.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거래약정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b>	수령함	상담자(*직원 확인란)	
<b>2. 위 약관과 약정서 앞 뒷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b>	들었음	직위	
<b>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b>	들었음	성명	(인)

###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연대보증인이란?]
- 카드사(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용어설명**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 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설명]

-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등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장·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보증**』은 채무자와 카드사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 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두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년 월 일자 기업여신거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장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때에는 보증 하지 않습니다.

### 제7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카드사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카드사는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카드사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 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근)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종 별	증서 기·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금 액 (계약액)	20 . . .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계좌번호	수익자				

### 제8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구 분	20.	20.	20.	20.	20.
부 채 비 율	%	%	%	%	%
자 기 자 본 비 율	%	%	%	%	%
( ) 비 율	%	%	%	%	%
( ) 비 율	%	%	%	%	%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카드사와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 ③ 본인은 카드사가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카드사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 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 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 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카드사가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 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 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 현황

## 제10조 자금용도 외 유용 시 제재조치

①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 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 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② 자금용도 사후점검 대상인 여신은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③ 용도 외 유용 최초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1년까지, 추가 적발 시 적발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 제11조 유효기간

이 약정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본인이 이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효되며, 본인은 카드사에 대한 약정서와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제12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카드사의 관계법령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	-----	-----

대출이용자(겸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인 기본사항 및 대출조건 세부사항, 기타 고지사항, 그리고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하나카드 주식회사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본 인 : (인)
	연대보증인 : (인)

이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